

협업 참여확인서(추진기업)

추진기업	기업명		법인등록번호	
	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	우(-)		
	홈페이지	http://		
	대표자명			
총괄책임자	성명		전화	
	소속/직위		F A X	

협업사업명								
사업기간	2026. 12. 10. ~ 20 . . . (개월)							
협업참여분야 (○ 표시)	제조		R&D		마케팅		지식 서비스	
주 생산품								
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에 따라 상기 협업에 참여함을 확인합니다.

의
의
의

대표자: 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및 협업계획서 각 1부	수수로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협업 참여확인서(참여기업)

참 여 기 업	기 업 명		법인등록번호	
			사업자등록번호	
	주 소	우(-)		
	홈페이지	http://		
	대표자명			
총괄책임자	성 명		전 화	
	소속/직위		F A X	

협업사업명								
사업기간	2026. 12. 10. ~ 20 . . . (개월)							
협업참여분야 (○ 표시)	제조		R&D		마케팅		지식 서비스	
주 생산품								
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제1항에 따라 상기 협업에 참여함을 확인합니다.

이
양
도

대표자: (서명 또는 인)

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및 협업계획서 각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(추진기업)

1. 기업 현황

기 업 명		대 표 자		
업 종	(표준산업분류번호 :)			
생산품목				
사업규모	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
	자본금 (백만원)			
	총자산 (백만원)			
	매출액 (백만원)			
	순이익 (백만원)			
	종업원수(명)			

* 지원자가 회사인 경우에 한해 작성

* 사업규모는 직전 3개년도를 작성

2. 주요 경영·기술진 구성

구분	성명	직위	담당업무	최종학력 (전공, 학위)	주요경력
경영·기술진					

3. 조직 현황

〈조직기구표〉

* 부서별, 과별 인원수를 기재(전담조직 운영형태 및 연구개발 인력형태도 표기)

4. 연구개발 현황

4-1. 연구개발 인력

성명	직위	최종학력 (전공·학위)	주요경력

4-2. 연구개발 실적

개발과제 및 내용	개발기간	사업규모 (소요자금)	비고 (개발자 표기)

* 신청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

** 비고란은 과거 신청기업의 것, 대표자의 것, 주요 기술진의 것 표기

4-3. 산업재산권

종류	고안명칭	등록번호	등록일	발명자 (고안자)	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	전용 실시권자

* 1. 종류 : ①발명특허등록 ②실용신안등록 ③의장등록

2. 출원중인 경우 등록번호와 등록일만에 신청접수번호와 신청일을 기재

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(참여기업)

1. 기업현황

기 업 명		대 표 자		
업 종	(표준산업분류번호 :)			
생산품목				
사업규모	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
	자본금 (백만원)			
	총자산 (백만원)			
	매출액 (백만원)			
	순이익 (백만원)			
	종업원수(명)			

* 지원자가 회사인 경우에 한해 작성

* 사업규모는 직전 3개년도를 작성

2. 주요 경영·기술진 구성

구분	성명	직위	담당업무	최종학력 (전공, 학위)	주요경력
경영·기술진					

3. 조직현황

〈조직기구표〉

* 부서별, 과별 인원수를 기재(전담조직 운영형태 및 연구개발 인력형태도 표기)

4. 연구개발 현황

4-1. 연구개발 인력

성명	직위	최종학력 (전공·학위)	주요경력

4-2. 연구개발 실적

개발과제 및 내용	개발기간	사업규모 (소요자금)	비고 (개발자 표기)

* 신청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기재

** 비고란은 과거 신청기업의 것, 대표자의 것, 주요 기술진의 것 표기

4-3. 산업재산권

종류	고안명칭	등록번호	등록일	발명자 (고안자)	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자	전용 실시권자

* 1. 종류 : ①발명특허등록 ②실용신안등록 ③의장등록

2. 출원중인 경우 등록번호와 등록일만에 신청접수번호와 신청일을 기재

협업체 구성 협약서

○ 사업명 : 000

○ 협약당사자

- 추진기업명 대 표 :

- 참여기업명 대 표 :

- 참여기업명 대 표 :

○ 협약기간 : 2026년 12월 10일 ~ 년 월 일 (개월)

○ 사업비

구 분	현 금	현 물	합 계
추진기업			
참여기업			
참여기업			
합 계			

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협업체를 구성하여 000 협업사업계획(이하 “협업사업”이라 한다)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서는 협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역할 및 의무) ①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불임의 협업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추진기업은 협업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위에 있어 협업체 대표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③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본 협약상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으로든 제3자와의 동업으로든 별도로 경영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④협업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추진기업 : 00 제품 생산

참여기업 : 00 제품 개발

참여기업 : 00 제품 판매

⑤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동 협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협의, 조정 등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⑥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협약 상대방이 협업사업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(정보 등)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 다만, 협업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응하지 않을 수 있다.

⑦추진기업은 매월 00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과 협업사업의 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.

⑧참여기업은 추진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협업사업과 관련된 영업 및 거래에 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고 영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조(추가 소요비용 부담)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사업비 이외에 담당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. 다만, 협업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추가 소요비용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부담을 결정한다.

제4조(제품공급단가 및 수익의 배분) ①추진기업은 참여기업에게 00제품을 000원/개에 공급한다.

②협업사업에 따른 수익의 배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추진기업 : 00제품 판매 세전 순이익의 00%

참여기업 : 00제품 판매 세전 순이익의 00%

참여기업 : 00제품 판매 세전 순이익의 00%

③참여기업은 00년 00월 00일부터 본 협약기간 중 매월 00일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에게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지급하여야 하며, 동시에 대차대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품질보증) ①협업사업 제품의 품질 이상으로 인한 소비자에 대한 배상(제조물책임, 환불, A/S)은 추진기업이 책임을 진다. 다만, 사후에 제품 설계의 하자로 인한 품질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참여기업이 책임을 지며, 이 경우 참여기업은 추진기업의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.

②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협업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일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가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.

제6조(지적재산권 소유권) ①협약기간 중 협업사업 제품에 관련되어 발명,고안된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은 참여기업이 출원하여 소유하고, 추진기업에게 전용실시권을 준다.

②협약 기간 완료 후에는 지적재산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해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이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)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본 협약의 일부를 개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협약의 해약) ①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중 어느 하나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서 규정한 제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②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중 어느 하나가 부도, 파산, 화의, 휴업, 폐업,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및 영업면허 또는 영업등록 취소 처분된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③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중 어느 하나가 협업사업 참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중 어느 하나가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중소기업부로부터 협업사업 선정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⑤제1항내지 제4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경우, 해약에 책임이 있는 업체는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하며, 협업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, 본 협약상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으로든 제3자와의 동업으로든 별도로 경영할 수 없다.

제9조(비밀보장)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 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, 복사, 발표,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할 수 없고,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일반사항) ①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생길 경우, 추진기업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분쟁을 조정한다.

제11조(협약의 효력)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추진기업과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하고,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간에 서명·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.

년 월 일

붙임 : 협업체획 1부

추진기업명 :

대 표 자 (인)

참여기업명 :

대 표 자 (인)

참여기업명 :

대 표 자 (인)